

『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9인

2. 제안이유

- 통·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선에서 헌신, 봉사하는 통·리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학금지급 대상학력을 「중·고등학교」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삭제하고 「고등학교」로 조정 (안 제1조)
- 장학생의 자격을 통·리장으로 「2년 이상」 근속한 자의 자녀를 「1년 이상」으로 조정 (안 제2조)
-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장학생 선발의 중·고등학교 배정비율 삭제 (안 제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
- 「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통·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1조는 장학금지급 대상 학력을 「중·고등학교」에서 의무교육인 「중학교」를 삭제하여 「고등학교」로 조정하고
- 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통·리장으로 「2년 이상」근속한 자의 자녀를 「1년 이상」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는 등 선발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에서 헌신, 봉사하는 통·리장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